

	법규적용 여부 결정서		표 준 번 호	법규-08	제 정 일 자	2013.08.28
	폐기물관리법		개정일자(번호)	2023.12.29 (3)	쪽 번 호	1 / 9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총칙	사업장폐기물	법 2 조 령 2 조	“사업장폐기물”이란 다음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사업장 2.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3.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4.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4 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6. 법 제 29 조제 2 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7.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8. 폐기물을 1 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9.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 톤(공사를 착공/마칠 때까지 배출량)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10.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을 5 톤(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마칠 때까지 배출량)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 령 2 조에 해당되지 않음 ☒ 사업장폐기물에 해당 됨 - 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 지정폐기물 배출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폐기물 처리 기준 등 (보관, 수집, 운반 및 처리 기준)	법 13 조 령 7 조, 규칙 14 조, 규칙별표 5	폐기물배출자 및 수탁자는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별표 5] 을 준수 해야 함.		폐기물관리절차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법 13 조의 2 영 7 조의 2 규칙 14 조의 3	누구든지 다음 각 호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 1. 비산먼지, 악취가 발생하거나 휘발성유기화합물, 대기오염물질 등이 배출되어 생활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아니할 것 2. 침출수나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유출되어 토양, 수생태계 또는 지하수를 오염시키지 아니할 것 3. 소음 또는 진동이 발생하여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할 것 4.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제거하거나 안정화하여 재활용제품이나 원료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람이나 환경에 위해를 미치지 않도록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5.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활용의 기준을 준수할 것		☒ 해당없음/전량위탁처리 ☐ 자체 재활용 실시	
	생활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법 15 조①②	- 생활폐기물은 관할 조례에 따라 스스로 처리 또는 양을 줄여 배출 - 생활폐기물을 조례에 따라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		조례 준수 보관 관리	
	음식물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법 15 조의 2①② 영 8 조의 4 규칙 16 조의 12 법 15 조의 2③⑤ 규칙 17 조 규칙[별표 5 의 7]	다음의 음식물폐기물 다량 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을 관할관서에 신고 및 조례 준수 - 100 명 이상 집단 급식소 운영자(예, 아침:30, 점심:40, 저녁:50 인=120 명) - 기타 영 8 조의 4 에 규정된 자 다음의 변경사유 발생 시 변경신고 실시 -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방법,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자, 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 - 음식물류폐기물 공동처리운영기구의 대표자, 대상사업장 수가 변경된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적법업체에 위탁하여 수집, 운반, 재활용하고, 위탁한 경우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제 13 조/제 13 조의 2 에 따른 기준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폐기물적정처리 여부를 1 회/월 확인(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 등 활용) 2. 의심이 되는 경우, 스스로 또는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를 통해 처리현황 확인 3.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 이용 시, 수수료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 납부 4. 수탁자가 위탁계약 미준 수 및 적정처리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폐기물처리위탁을 중단 다만, 제 4 조나 제 5 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해당없음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 해당없음 ☐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 1 회/월 수탁자 적정처리정보 확인	

	법규적용 여부 결정서			표 준 번 호	법규-08	제 정 일 자	2013.08.28
	폐기물관리법			개정일자(번호)	2023.12.29 (3)	쪽 번 호	2 / 9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준수사항	법 17 조① 규칙 17 조의 2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다음사항을 지켜야 한다.< 2023. 8. 16> 1. 발생폐기물이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확인 2. 적법하게 처리(법 13 조, 13 조의 2) 3. 최대한 폐기물 발생 억제(감량화 처리시설 설치, 기술개발, 재활용 등) 4.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처리업체의 적법처리 여부 확인 (법 15 조의 2⑤ 내용준용: 1 회/월) 1. 사업장의 폐기물(공사폐기물)을 10 톤 이상 배출하는 자 2.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총급식인원 100 인 이상) 3. 지정폐기물이 아닌 다음의 일반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가. 오니, 폐합성고분자화합물(월 평균 2 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 나. 광재, 분진, 폐사(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재별구이 전에 유약을 바른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또는 폐흡수제(각각 월 평균 1 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 4. 다음 각 목의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가. 오니(월 평균 1 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 나.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각각 월 평균 130kg 또는 합계 월 평균 200kg 이상 배출되는 경우) 다.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폐레커 또는 폐석면(각각 월 평균 200kg 또는 합계 월 평균 400kg 이상 배출되는 경우) 라.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마. 폐유독물질 바. 종합병원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 사. 수은폐기물 아.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5. 제 21 조제 1 항제 7 호 및 제 7 호의 2 에 해당하는 자(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다만, 법 4 조, 법 5 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음 ☒기준 준수 / 적법 처리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 1 회/월 수탁차 적정처리정보 확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기준	법 17 조② 규칙 18 조①,②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관할관서에 신고 실시 - 배출시설 설치 운영자 : 100kg/일 ▪ 대기/폐수/소음진동배출시설 인허가 받은 자 ▪ 공공 폐수/하수/분뇨처리시설 설치 운영자 - 상기 외 폐기물 배출자 : 300kg/일 - 건설공사/일련의 공사.작업 : 5 톤 이상 - 사업장폐기물공동처리기구 운영자	☐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완료	▪ 폐기물관리절차,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증명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폐기물분석결과서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 증명서		

	법규적용 여부 결정서			표 준 번 호	법규-08	제 정 일 자	2013.08.28
	폐기물관리법			개정일자(번호)	2023.12.29 (3)	쪽 번 호	3 / 9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 신고 기준 및 시기	법 17 조② 규칙 18 조④	아래에 해당될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 실시	발생시 및 1 회/연 이상 준수평가 후 해당 시 변경신고 실시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증명서	
			-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월 배출량(전년도 1 년간)이 50/100 이상 증가한 경우 - 신고 당시에는 배출되지 아니한 사업장폐기물이 1 일 평균 300KG(배출시설운영자는 100KG) 이상 추가로 배출되는 경우 -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한 경우(폐기물의 처리방법이 동일한 경우로서 처리장소만을 변경한 경우를 제외) - 공동처리운영기구 대표자, 대상사업장의 수 및 대상폐기물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공동처리에 한함) - 폐기물이 발생하는 공사기간이 3 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 21 조제 1 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이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경우<2023.12.29>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 22 조제 1 항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경우<2023.12.29>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 36 조제 2 항제 1 호에 따라 매립한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파내는 경우<2023.12.29>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법 17 조⑤ 규칙 18 조의 2①	1.지정폐기물이 규칙 18 조 2① 이상 배출 시 관할관서에 다음서류제출 처리계획 확인 실시 2.지정폐기물처리계획확인 대상 기준 (규칙 18 조의 2①) <개정:2022.11.29>	☐ 해당 되지 않음 ☒ 처리계획확인대상에 해당 됨		폐기물관리절차, 폐기물처리계획서, 폐기물분석결과서, 폐기물수탁확인서, 폐기물처리계획확인증명서	
				폐기물 종류 발생량(톤)/월			
		1. 오니 : 월 평균 500kg 이상 배출 2. 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 : 각각 월 평균 50kg 또는 합계 월 평균 130kg 이상 배출 3. 폐합성고분자화합물,폐산,페알칼리,페페인트,페래커 : 각각 월 평균 100kg 또는 합계 월 평균 200kg 이상 배출 3.2 폐석연을 월 평균 2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 4.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5. 폐유독물질 6. 의료폐기물 7. 수은폐기물 8.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 7. 영 별표 1 제 12 호에 따라 고시된 지정폐기물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 이상으로 배출					
변경확인 및 시기	법 17 조⑥ 규칙 18 조 2⑦	지정폐기물 변경확인 기준 1/2. 상호 또는 사업장소재지 변경 3. 확인 받은 지정폐기물의 월 평균 배출량(전년도 1 년간)의 30/100 이상 증가 4. 새로 배출되는 지정폐기물이 제 5 항에 따라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 대상이 되는 경우 4.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운반자, 처리자의 변경 5. 대상사업장의 수 또는 대상폐기물의 종류 변경(공동처리)	발생시 및 1 회/연 이상 준수평가 후 해당 시 변경확인 실시		폐기물처리계획확인증명서		
폐기물감량지침 준수	법 17 조⑦ 영제 9 조 별표 5	다음 대상사업자는 폐기물발생 억제를 위한 기본방침 및 절차 준수 1)지정폐기물 : 100 톤 이상/연평균 2)지정폐기물 外 : 1,000 톤 이상/연평균			■해당되지 않음 ☐ 규칙제 13 조 :폐기물발생억제 기본방침 및 절차 준수		
	규칙 19 조	1. 기술개발, 공정개선, 재이용 등의 방법으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자체계획을 수립, 시행할 것 2. 제 1 호에 따른 자체계획의 내용에는 자체적으로 설정한 폐기물 발생억제 목표율 및 효율적인 달성방법 등을 포함할 것 3. 제 1 호에 따른 자체계획의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할 것 4.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같은 종류의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 간의 상호 정보교환 및 기술제공 등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 기 위한 공동 노력에 적극 참여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리, 회수하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법규적용 여부 결정서			표 준 번 호	법규-08	제 정 일 자	2013.08.28
	폐기물관리법			개정일자(번호)	2023.12.29 (3)	쪽 번 호	4 / 9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사업장폐기물 처리	법 18 조①	폐기물처리 시,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18 조①에서 규정한 적법업체에 위탁처리	적법한 처리업체 계약		폐기물위탁처리계약서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법 18 조③ 규칙 20 조	다음 각호의 폐기물 배출자는 처리시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	☐ 해당되지 않음 ☒ 사업장폐기물의 인계·인수내용 적법처리 시스템에 입력		올바로 입력 데이터	
			1. 영 제 2 조제 8 호 및 제 9 호에 따른 건설/공사/작업 사업장의 폐기물(5 톤 이상 배출 시) 2. 지정폐기물이 아닌 다음 각 목의 사업장폐기물 가. 오니(월 평균 1 톤 이상 배출 시) 나. 광재, 분진, 폐사,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월 평균 500kg 이상 배출 시) 3. 제 18 조의 2 제 1 항 각 호의 지정폐기물 4. 제 21 조제 1 항 각 호의 자가 공동으로 처리하는 지정폐기물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의 작성·제공 의무	법 18 조의 2 규칙 22 조, 23 조,	-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유해성 정보자료”로 작성(원료변경 포함) 작성 내용 작성 대상 폐기물 1.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2. 사업장폐기물의 물리·화학적 성질 및 취급 시 주의사항 3. 사업장폐기물로 인하여 화재 등의 사고 발생 시 방제 등 조치방법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 제외) 2. 영 제 7 조제 1 항제 12 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폐기물(미고시) 전문기관 1. 한국환경공단 2.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 3.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 - 폐기물 수탁자에게 “유해성 정보자료” 제공 -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집·운반차량/보관장소/처리시설에 각각 게시하거나 비치	☐ 해당 없음 ☒ 폐기물유해성 정보자료 게시			
폐기물처리 업자 등에 대한 지도·감독	폐기물처리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	법 35 조 영 제 17 조 규칙 50 조	- 영제 17 조 : 법정교육 이수 대상자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자 및 지정폐기물처리계획확인 받은 사업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등 - 교육주기 : 1 회/3 년 이상	3 년마다 1 회 이상		교육수료증	
	장부 등의 기록·보존	법 36 조①,② 규칙 58 조①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처리계획확인 받은 자는 다음의 서류를 작성 후 3 년간보관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올바로 시스템 입력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자동 생성		폐기물관리절차,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법 36 조① 규칙 58 조②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은 이를 전자기록 매체에 기록·보존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도별로 출력하여 보관해야 함	검토 후 필요 시 적용			
	폐기물처리실적 보고	법제 38 조 규칙 60 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처리계획 확인 받은 자는 다음의 서류를 작성 후 다음연도 2 월말까지 관할관서에 제출 -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 해당되지 않음 ☒ 매년 보고		폐기물관리절차,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	

	법규적용 여부 결정서			표 준 번 호	법규-08	제 정 일 자	2013.08.28
	폐기물관리법			개정일자(번호)	2023.12.29 (3)	쪽 번 호	5 / 9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폐기물 인계서 등의 전산처리	법 제 45 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등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관한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해당되지 않음 ☒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			
		영 제 23 조의 2	1. 법 제 17 조제 2 항부터 제 4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확인 서류 및 변경 신고·확인 서류의 제출 2. 법 제 24 조의 2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폐기물 수출입 신고 서류 및 변경 신고 서류의 제출 3. 법 제 25 조제 1 항·제 3 항 및 제 11 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 허가·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서류의 제출 4. 법 제 29 조제 2 항부터 제 4 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승인·신고 서류 및 변경 승인·신고 서류의 제출 5. 법 제 36 조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상황 등의 기록 6. 법 제 38 조제 1 항에 따른 보고서의 제출				

	법규적용 여부 결정서			표 준 번 호	법규-08	제 정 일 자	2013.08.28
	폐기물관리법			개정일자(번호)	2023.12.29 (3)	쪽 번 호	6 / 9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지정폐기물의 종류 <개정 2021. 3. 9.>

1. 특정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가. 폐합성 고분자화합물

- 1) 폐합성 수지(고체상태의 것은 제외한다)
- 2) 폐합성 고무(고체상태의 것은 제외한다)

나. 오니류(수분함량이 95퍼센트 미만이거나 고형물함량이 5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 1) 폐수처리 오니(환경부령[뒷장 참조]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2) 공정 오니(환경부령[뒷장 참조]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 폐농약(농약의 제조·판매업소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부식성 폐기물

가. 폐산(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2.0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나. 폐알칼리(액체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지수가 12.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수산화칼륨 및 수산화나트륨을 포함한다)

3. 유해물질함유 폐기물(환경부령[뒷장 참조]으로 정하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가. 광재(鑛滓)[철광 원석의 사용으로 인한 고로(高爐)슬래그(slag)는 제외한다]

나. 분진(대기오염 방지시설에서 포집된 것으로 한정하되,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 폐사(廢砂)

라. 폐내화물(廢耐火物) 및 재벌구이 전에 유약을 바른 도자기 조각

마. 소각재

바. 안정화 또는 고형화·고화 처리물

사. 폐촉매

아.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광물유·동물유 및 식물유{폐식용유(식용을 목적으로 식품 재료와 원료를 제조·조리·가공하는 과정, 식용유를 유통·사용하는 과정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름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외한다}의 정제에 사용된 폐토사(廢土砂)를 포함한다]

자. 삭제 <2020. 7. 21.>

4. 폐유기용제

가. 할로겐족(환경부령[뒷장 참조]으로 정하는 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물질로 한정한다)

나. 그 밖의 폐유기용제(가목 외의 유기용제를 말한다)

5. 페페인트 및 페래커(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페인트 및 래커와 유기용제가 혼합된 것으로서 페인트 및 래커 제조업, 용적 5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동력 3마력 이상의 도장(塗裝)시설,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것

나. 페인트 보관용기에 남아 있는 페인트를 제거하기 위하여 유기용제와 혼합된 것

다. 페페인트 용기(용기 안에 남아 있는 페인트가 건조되어 있고, 그 잔존량이 용기 바닥에서 6밀리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지정폐기물의 종류 <개정 2021. 3. 9.>

6. 폐유[기름성분을 5퍼센트 이상 함유한 것을 포함하며,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함유 폐기물, 폐식용유와 그 잔재물,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는 제외한다]

7. 폐석면

가. 건조고형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하여 석면이 1퍼센트 이상 함유된 제품·설비(뿔칠로 사용된 것은 포함한다) 등의 해체·제거 시 발생하는 것

나. 슬레이트 등 고형화된 석면 제품 등의 연마·절단·가공 공정에서 발생한 부스러기 및 연마·절단·가공 시설의 집진기에서 모아진 분진

다. 석면의 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뿔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경우에는 모든 비닐시트)·방진마스크·작업복 등

8.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가. 액체상태의 것(1리터당 2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나. 액체상태 외의 것(용출액 1리터당 0.003밀리그램 이상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9. 폐유독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의 유독물질을 폐기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제1호다목의 폐농약(농약의 제조·판매업소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2호의 부식성 폐기물, 제4호의 폐유기용제, 제8호의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및 제11호의 수은폐기물은 제외한다]

10. 의료폐기물(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이나 시험·검사 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10의2.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공제품 중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으로서 방사능 농도가 그램당 10벵크렐 미만인 폐기물을 말한다. 이 경우 가공제품으로부터 천연방사성핵종(天然放射性核種)을 포함하지 않은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다]

11. 수은폐기물

가. 수은함유폐기물[수은과 그 화합물을 함유한 폐램프(폐형광등은 제외한다), 폐계측기기(온도계, 혈압계, 체온계 등), 폐전자 및 그 밖의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제품을 말한다]

나. 수은구성폐기물(수은함유폐기물로부터 분리한 수은 및 그 화합물로 한정한다)

다.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수은함유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과 폐형광등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되,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7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폐기물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용출 시험 결과 용출액 1리터당 0.005밀리그램 이상의 수은 및 그 화합물이 함유된 것으로 한정한다)

12. 그 밖에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법규적용 여부 결정서			표 준 번 호	법규-08	제 정 일 자	2013.08.28
	폐기물관리법			개정일자(번호)	2023.12.29 (3)	쪽 번 호	7 / 9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 5]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개정 2022. 11. 29.>

1.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 1) 생활폐기물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수집·운반 또는 재활용으로 한정한다)가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이하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할 수 있다.
-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과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 3) 폐가전제품을 수집·운반·보관하는 과정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해체하거나 의도적으로 파손하지 않아야 하며, 파손·낙하·붕괴 등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보관의 경우

- 1) 생활폐기물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 2) 생활폐기물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수집이 쉬운 구조와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3) 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는 악취가 나거나, 쥐·모기·파리 등 해충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4) 제66조제6항제5호에 따른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제9조제3항에 따라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받은 임시보관장소에서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기름성분 등이 흘러나올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용기를 사용하고 흔들림 등으로 인한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내용물이 보관장소 밖으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바닥을 시멘트·아스팔트 등으로 포장하고 방류턱을 갖춘 시설로서 외부인의 출입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 5) 천연방사성제품생활폐기물은 제4호나목1), 4), 5), 9), 11) 및 13)에 따른 방법으로 보관해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나. 보관의 경우

- 1) 음식물류 폐기물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용봉투 또는 전용 수거용기에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2)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는 악취가 나거나 오수가 흘러나오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 5]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개정 2022. 11. 29.>

3. 사업장일반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 1)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은 해당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외의 폐기물 및 영 제2조제7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하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이라 한다)과 혼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2)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 3)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분리·선별·압축·파쇄·세척하는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별표 1 제1호가목부터 타목까지 및 같은 표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해물질은 폐기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같은 표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들어 있는 폐기물은 제외한다)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 4)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레미콘·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현장 등에서 반출한 페레이콘·페콘크리트·페아스팔트콘크리트 제품 및 영 제2조제9호에 따른 일련의 공사 또는 작업으로 발생하는 페콘크리트, 페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및 건설폐토석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 및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 보관의 경우

- 1) 사업장일반폐기물은 해당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 2) 자체하중 및 보관하려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 또는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축조신고를 한 가설건축물 중 폐기물이나 침출수의 누출·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임시창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만 해당한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광재·폐내화물·폐지·철강슬래그·고철·폐유리조각·폐목재·페타이어 및 밀폐된 보관용기에 보관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
나) 폐합성수지·폐용기류·폐주물사·폐판넬·석재 가공공장에서 발생한 폐석재(폐수처리오니는 제외) 또는 폐석분토사(폐수처리오니는 제외하고,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자체 석산의 복구용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 등으로서 침출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법규적용 여부 결정서			표 준 번 호	법규-08	제 정 일 자	2013.08.28
	폐기물관리법			개정일자(번호)	2023.12.29 (3)	쪽 번 호	8 / 9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 5]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개정 2022. 11. 29.>

3. 사업장일반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앞장에서 이어짐)

- 3) 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이 시작되는 날부터 90일(중간가공 폐기물의 경우는 120일을 말한다)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가) 보관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양이 5톤 미만인 경우
- 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숙성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철강슬래그를 보관하는 경우
- 다)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자체 석산의 복구용으로 재활용하는 폐석분토사(폐수처리오니는 제외한다)를 보관하는 경우
- 라) 제17조 및 별표 5의7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 위탁을 중단해야 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보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
- 8)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는 배터리 단자, 연결케이블 등을 절연처리한 후 고온, 화기, 직사광선 및 수분 등에 노출되지 않고 환기가 잘되는 건조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4.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의 기준 및 방법

나. 보관의 경우

- 1)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2) 폐유기용제는 휘발되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 3) 폐석면은 다음과 같이 보관한다.
- 가) 석면의 해체·제거작업에 사용된 바닥비닐시트(뽕칠로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작업 시 사용된 비닐시트의 경우 모든 비닐시트), 방진마스크, 작업복 등 흠날릴 우려가 있는 폐석면은 습도 조절 등의 조치 후 고밀도 내수성재질의 포대로 2중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여 흠날리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 나) 고형화 되어 있어 흠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은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로 포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4)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파손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5) 자체 무게 및 보관하려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무게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을 포장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추며, 보관 중인 폐기물이 외부로 흘러나올 우려가 없는 충분한 규모의 유출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침출수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관할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나)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관할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 5]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개정 2022. 11. 29.>

4.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의 기준 및 방법

- 다) 드럼 등 보관용기나 보관탱크에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로서 내용물이 흘러나올 우려가 없고, 보관용기나 보관탱크 외부에 지정폐기물이 묻어 있지 않은 경우(이 경우에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 시의 적재무게를 견딜 수 있고, 지정폐기물 취급 과정에서 또는 보관용기·보관탱크의 손상 등의 사유로 내용물이 주변 토양이나 외부에 흘러나오지 않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으로 바닥을 포장하고, 충분한 규모의 방류턱 또는 방류벽을 갖춘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 6) 지정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 중 폐산·폐알칼리·폐유·폐유기용제·폐촉매·폐흡착제·폐흡수제·폐농약,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폐수처리 오니 중 유기성 오니는 보관이 시작된 날부터 45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밖의 지정폐기물은 6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7조 및 별표 5의7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 위탁을 중단해야 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할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이 3톤(2013년 12월 31일까지는 4톤)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년의 기간 내에서 보관할 수 있다.
- 7) 제31조 및 6)에도 불구하고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을 보관하려는 배출자 및 처리업자는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1년 단위로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8) 7)에 따라 보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배출자 및 처리업자는 별지 제69호서식에 따라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폐기물의 보관기간 연장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폐기물 보관기간 연장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법규적용 여부 결정서			표 준 번 호	법규-08	제 정 일 자	2013.08.28
	폐기물관리법			개정일자(번호)	2023.12.29 (3)	쪽 번 호	9 / 9
구 분	적 용 법 규 파 악 결 과			당사 적용 계획 / 현황			
	항 목	조 항	규 제 내 용	당 사 현 황		관 련 문 서 / 기 록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 5]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개정 2022. 11. 29.>

4.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의 기준 및 방법

나. 보관의 경우

- 9) 지정폐기물의 보관창고에는 보관 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 보관가능 용량, 취급 시 주의사항 및 관리책임자 등을 적어 넣은 표지판을 다음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지정폐기물의 종류가 같은 용기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 등을 각각 알 수 있도록 표지판에 적어 넣어야 한다. .
- 가) 보관창고에는 표지판을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나) 표지의 규격: 가로 60센티미터 이상×세로 40센티미터 이상(드럼 등 소형용기에 붙이는 경우에는 가로 15센티미터 이상×세로 10센티미터 이상)
- 다) 표지의 색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선 및 검은색 글자
- 라) 표지판의 보기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①폐기물의 종류:	②보관가능용량: 톤
③관리책임자:	④보관기간: ~ (일간)
⑤취급 시 주의사항 ○보관 시: ○운반 시: ○처리 시:	
⑥운반(처리)예정장소:	

- 10) 수은폐기물은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해 보관해서는 안 되며, 그 종류별로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 .
- 가) 수은함유폐기물 및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은 폴리에틸렌 등 고밀도 내수성 재질로 이중 포장한 후 밀봉해 보관해야 한다.
- 나) 수은구성폐기물은 수은전용용기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별표 5]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개정 2022. 11. 29.>

4. 지정폐기물(의료폐기물은 제외한다)의 기준 및 방법

- 11)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은 다음과 같이 보관해야 한다.
- 가) 폐기물이 비산, 유출 또는 방출되지 않도록 폴리에틸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을 사용하여 포장한 상태로 보관해야 한다.
- 나) 보관장소는 지붕과 벽면이 있고, 통풍이 잘 되며,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격리된 곳이어야 한다. 다만, 빗물 등이 침투하지 않도록 방수 재질의 덮개를 설치하여 관찰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야외에 보관할 수 있다.
- 다) 보관장소에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 라) 보관장소에는 화재 및 침수에 대비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 마) 보관장소를 출입하는 작업자는 방진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